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수 의원입니다.
- □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 니다.
- □ 서울시 수도사업은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액은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가 부담해야할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용요금(10㎡/월), 소방용수 구경별기본요금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액을 일반회계 등에서 보존 받지 못하고 있어 상수도 세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수도요금 현실화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국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